

의안번호	제752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
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4년 10월 24일

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

의안 번호	75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10월 2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출연개요

- 대상기관 :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
- 출연목적 및 필요성
 - 청주·충주의료원의 간호사 수급 문제 개선 및 유능한 간호인력의 타지역 유출방지
 - 감염병대응, 공공의료사업 수행 등 질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마련
- 출연내역 :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
- 출연금액 : 172,000천원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체 : 붙임

5. 기타

1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보건정책과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공공의료팀	한찬오	곽경희	차주희	3132

기관명	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						
출자·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사장 : 김영환 ○ 일반현황 : (소재지)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425, 도민교육관 (주요사업) 장학사업, 인재양성사업, 평생교육 						
출자·출연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연 예정금액 : 172백만원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 백만원) 						
	구분	2024년 사업비	2025년 사업비*	재원별			
	계	344	344	계	도비출연금	인재양성재단	의료원 등
				344	172	34.4	137.6
※ 재정부담 비율 : 도 50%,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10%, 의료원 등 40%							
출자·출연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로 공공병원으로서의 공익적 기능강화 및 포괄적 공공의료서비스 안정적 제공 	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 ※ 제8조(출연) 도지사·시장·군수는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 						
지도감독부서인견(중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충북의 우수인재를 발굴·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각종 장학사업과 함께 대학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음. ○ 청주·충주의료원에서는 부족한 간호사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수급 방안이 필요함. ○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장학사업과 연계하여 생활장학금 지원에 소요되는 출연금 지원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 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연기관 현황(기관연혁, 인원 및 조직현황 등) 3. 출연사업계획서 		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경영평가) 경영층 리더십 및 전문성, 경영혁신활동, 국·도정우수시책 추진실적 우수
- 공공의료분야 간호인력 장학생선발 신설 등 도정과제와의 연계성을 높여 사업추진함
-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 특이사항 없음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은 「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4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
- 청주·충주의료원에서 부족한 간호사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은 부족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임
-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한 의무복무(2년)로 간호사 수급 안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역할수행 기여
- 이에,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사업을 통해 지방의료원에 우수한 간호인력을 발굴하여 공공간호사를 육성 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을 건의드립니다.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백만원)

내역	2024년 예산액(최종) (C)	2025년 예산안			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 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	172	172	172	0	0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1-②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

설립근거	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					전화번호 : 043-224-0221 홈페이지 : www.chrdf.or.kr	
주요연혁	- '08. 2월 설립등기 - '17. 8월 국민교육발전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 - '22. 7월 제5대 김영환 이사장 취임			기관형태	출연기관		
인원현황 ('23.8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21명		20명		1명		
임원	직책(직책명)	성명	소속(직위)			임기	
	이사장	김○○	충청북도지사			재임기간	
	이사	윤○○	충청북도교육감			"	
	"	신○○	청주부시장			"	
	"	김○○	충주부시장			"	
	"	맹○○	제천부시장			"	
	"	이○○	보은부군수			"	
	"	한○○	옥천부군수			"	
	"	강○○	영동부군수			"	
	"	김○○	증평부군수			"	
	"	문○○	진천부군수			"	
	"	장○○	괴산부군수			"	
	"	서○○	음성부군수			"	
	"	이○○	단양부군수			"	
	"	김○○	충청북도 과학인재국장			"	
	"	민○○	충청북도 행정국장			"	
	"	김○○	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			"	
	"	김○○	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			"	
	"	이○○	충북대학교 교수			24.09.13. ~ 26.09.12.	
	"	오○○	대신정기화물 회장			24.09.13. ~ 26.09.12.	
	"	이○○	유진테크놀로지 대표			24.09.13. ~ 26.09.12.	
	"	김○○	한국교원대 교수			23.06.29. ~ 25.06.28.	
	"	이○○	前 대성중학교 교장			23.06.29. ~ 25.06.28.	
"	류○○	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			23.06.29. ~ 25.06.28.		
"	정○○	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원장			24.09.13. ~ 26.09.12.		
감사	전○○	충청북도 라이즈추진과 과장			재임기간		
"	임○○	한빛회계법인사무소공인회계사			23.06.29. ~ 25.06.28.		
주요기능	- 우수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						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	81,000			지방공기업발전기금 (단위:백만원)		-
최근3년 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22	2023	2024	재무현황 (백만원) '23.12.31기준	자산	83,137
		예산액	6,308	9,255		10,460	부채
2023년 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	일반 회계	지자체 지원액	710	2,798	2,619	자본	82,932
		총수익	6,628			총비용	당기순이익

1-③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	구분	출자	172백만원(도비)
주관부서	보건정책과		출연	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지방의료원의 간호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간호대 재학생 인재 양성
- 장학금 지원을 통한 간호인력 수급안정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
- 사업기간 : 2025. 1 ~ 12월
- 총사업비 : 344백만원(출연금 172백만원)
- 주요내용 :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
 - 지원대상 : 간호학과 4학년 생활장학금 지원(1인 800만원/년, 43명)
- 출연근거 : 「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제8조

□ 산출기초

(단위:백만원)

구분	금액	산출내역	분담비율
운영재원 합계	344	8,000천원×43명 = 344백만원	100%
도 출연금	172	8,000천원×43명×50% = 172백만원	50%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	34.4	8,000천원×43명×10% = 34.4백만원	10%
청주·충주의료원	137.6	8,000천원×43명×40% = 137.6백만원	40%

□ 기대효과

- 공공간호사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자원 타지역 유출방지
-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 안정화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

□ 출자·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우수한 간호인력 타지역 유출 및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간호인력 채용난 지속
-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축소, 진료기능약화 및 기타 공공보건의료 사업 추진 난항 예상

지방재정법 및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

□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

제4조(사업)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- 1. 충북인재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
- 2.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
- 9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·위탁하는 사업
- 10. 그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

제8조(출연)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